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신설”	제1조의 2(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① 본교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 구현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본교는 학문으로 준비된 지도자 양성, 경건으로 훈련된 신앙인 양성, 사랑으로 헌신된 봉사자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신설 2021.9.1.)
제7조 (수업일수) ③수업은 주, 야간 정규수업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주말수업, 집중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③수업은 주, 야간 정규수업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절수업, <u>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u> , 현장실습수업, 주말수업, 집중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u>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원격수업운영규정 및 관련 운영세칙을 준용한다.</u>
제17조(입학허가 및 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입학허가 및 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u>단, 입학이 허가된 자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정(천재지변,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입학금은 제외)제도를 실시할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분할납부한 학생도 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u>
제64조(납입금) ①입학(신입·편입·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납입금) ①입학(신입·편입·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 및 등록금 등 납입금을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u>단, 등록금 부담 경감차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입학금 제외) 신청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u>
	부칙 1.(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